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¹⁾

- 관련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 규칙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5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조 1,544억원 대비 3.4%, 1조 6,146억원을 증액한 49조 7,691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⑤=④-①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⑤/①
	①=②+③	당초예산 ②	간주처리 ③	④		
총 계 규 모	48,154,464	48,114,455	40,008	49,769,118	1,614,654	3.4
일 반 회 계	34,429,312	34,418,927	10,384	35,596,933	1,167,621	3.4
특 별 회 계	13,725,151	13,695,527	29,623	14,172,184	447,033	3.3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1,67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9,290억 2,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하고, 세외수입 1,244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등은 647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34조 4,293억 1,200만원)보다 3.4%, 1조 1,676억 2,1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총 계	34,429,312	1,167,621	35,596,933	
세 외 수 입	1,484,052	124,407	1,608,45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69,024	△5,927	863,096	◦징수교부금수입 3,872 ◦재산임대수입 1,294 ◦사용료수입 95 ◦이자수입 38 ◦사업수입 △11,228
임 시 적 세 외 수 입	572,460	130,334	702,795	◦재산매각수입 127,269 ◦기타수입 1,525 ◦보조금반환수입 807 ◦자치단체간부담금 731
지 방 교 부 세	91,184	1,629	92,814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5,009	1,629	36,639	◦소방안전교부세 1,629
보 조 금	7,481,562	64,796	7,546,358	
국 고 보 조 금 등	7,481,562	64,796	7,546,358	◦국고보조금 57,1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08 ◦기금 3,3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9,985	976,787	1,286,773	
보전수입등	64,342	976,787	1,041,130	◦순세계잉여금 929,028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5,714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44
내부거래	245,642	-	245,64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 (13조 7,251억 5,100만원)보다 3.3%, 4,470억 3,300만원 증액된 14조 1,721억 8,4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868억 2,800만원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억 3,800만원을 차감한 861억 8,9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하고,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622억 100만원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부터 192억 1,000만원을 전입받아 1,814억 1,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3〉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특별회계	13,725,151	447,033	14,172,184
공기업특별회계	1,940,112	267,600	2,207,712
수도사업특수회계	1,030,000	86,189	1,116,189
공기업하수도사업특수회계	910,112	181,411	1,091,523
기타특별회계	11,785,039	179,432	11,964,47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수회계	1,816,460	△13,235	1,803,225
교통사업특수회계	1,688,857	73,517	1,762,374
광역교통시설특수회계	74,260	7,666	81,926
주택사업특수회계	3,100,275	△112,306	2,987,969
도시개발특수회계	1,980,322	65,373	2,045,695
균형발전특수회계	249,960	△57,407	192,553
학교용지부담금특수회계	11,485	9,788	21,274
의료급여기금특수회계	1,822,188	216,971	2,039,159
한강수질개선특수회계	29,680	△564	29,116
소방특수회계	1,011,548	△10,372	1,001,175

〈표 2-4〉 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49,769,118	100.0	48,154,464	100.0	1,614,654	3.4
	지 방 세 수 입	24,912,528	50.1	24,912,528	51.7	-	-
	세 외 수 입	5,384,967	10.8	5,236,355	10.9	148,611	2.8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879,774	7.8	3,816,744	7.9	63,030	1.7
	임 시 적 세 외 수 입	942,645	1.9	857,274	1.8	85,371	1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5,802	1.0	475,592	1.0	210	0.0
	지 난 연 도 수 입	86,743	0.2	86,743	0.2	-	-
	지 방 교 부 세	103,914	0.2	102,084	0.2	1,829	1.8
	보 조 금	9,552,895	19.2	9,395,123	19.5	157,771	1.7
	국 고 보 조 금 등	9,552,895	19.2	9,395,123	19.5	157,771	1.7
	시·도비보조금등	-	-	-	-	-	-
	지 방 채	1,933,858	3.9	1,933,858	4.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80,955	15.8	6,574,514	13.7	1,306,441	19.9
	보 전 수 입 등	1,632,209	3.3	570,312	1.2	1,061,896	186.2
	내 부 거 래	6,248,745	12.6	6,004,201	12.5	244,544	4.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표, p.8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8조 1,544억 6,400만원)보다 3.4%, 1조 6,146억 5,4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1조 1,67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2,853억 6,700만원을 순증 편성하고, '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을 위해 **조정교부금**은 1,113억 6,300만원,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800억 5,500만원, **징수교부금**은 189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세 전출**은 901억 5,600만원, **담배소비세 전출** 28억 5,5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 84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을 포함 34개 실·국·본부의 306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가 122개 세부사업에 대해 4,470억 3,3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6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808억 7,600만원,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는 192억 1,000만원,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05억 2,900만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는 103억 2,900만원을 증액요청하는 등 1,81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총 계	49,769,118	100.0	48,154,464	100.0	1,614,654	3.4
일반공공행정	8,575,282	17.2	7,990,976	16.6	584,306	7.3
공공질서및안전	1,616,161	3.3	1,619,718	3.4	△3,556	△0.2
교육	4,453,659	9.0	4,273,326	8.9	180,333	4.2
문화및관광	1,077,780	2.2	1,061,518	2.2	16,262	1.5
환경	2,799,951	5.6	2,528,755	5.3	271,195	10.7
사회복지	19,103,882	38.4	18,675,753	38.8	428,128	2.3
보건	758,890	1.5	698,067	1.5	60,823	8.7
농림해양수산	52,613	0.1	52,337	0.1	275	0.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8,462	1.3	579,057	1.2	79,404	13.7
교통및물류	5,381,004	10.8	5,344,859	11.1	36,145	0.7
국토및지역개발	2,911,175	5.9	2,911,445	6.1	△269	△0.0
과학기술	6,565	0.0	6,565	0.0	-	-
예비비	129,262	0.3	119,287	0.3	9,975	8.4
기타	2,244,424	4.5	2,292,795	4.8	△48,370	△2.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9~11

Ⅲ .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지난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는 지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290억 2,8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요청 하였음
- 관련 법령은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①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관련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9,290억 2,800만원)은 세입예산중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으로 9,290억 2,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9,290억 2,800만원)에 대해 ①자치구 전출,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등 이른바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하고, ③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50%를 적립하면 산술적인 실제 순세계잉여금(가용재원)은 2,853억 6,700만원으로 검토되나,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정산 외에도 '25년도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하는 30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중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553억 6,700만원으로 검토됨

〈표 3-1〉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용처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주요내역	
세 계 잉 여 금		929,028	A 세 계 잉 여 금	929,028
	법정의무경비정산	358,294	① 조정교부금교부	111,363 주1)
			재정보전금교부	80,055 주2)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18,933 주3)
			② 교육청전출	147,942 주4)
	조례상 기금적립	285,367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285,367 주5)
순 세 계 잉 여 금		285,367	가용재원 {A-(①+②+③)}	285,367 주6)

주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주2) '24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초과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반영

주3) '24년 시세입 초과징수분의 교부금을 '25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추경 반영

주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①지방세 정산분(841억 2,800만원),

② 담배소비세 정산분(△35억 8,300만원), ③지방교육세 정산분(673억 9,700만원)

주5)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주6) 순세계잉여금(2,853억 6,700만원)중 교육청 추가정산(300억원)을 차감한 실제 가용재원은 2,553억 6,700만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아울러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징수액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으로, 법정잉여금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정산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70%), 주택사업특별회계(20%), 교통사업특별회계(10%)로 편성하여 전출하여야 하나,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예산액(1조 8,593억 2,500만원)보다 부족징수(△42억 6,200만원)되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나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세입과목 중 잉여금(711)은 순세계잉여금(711-01)과 법정잉여금(711-02)으로 구분하고,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①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③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법정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구분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만 기재하여 제출한 바,
-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예산안에 구분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가용재원(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사료되어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세입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조 4,840억 5,200만원)보다 1,244억 7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①**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 △59억 2,700만원 감액요청하고, ②**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1,303억 3,400만원 증액요청한 것임
- ①**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수입**은 기정예산(76억 3,400만원)보다 38억 7,200만원,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2,010억 2,800만원)보다 12억 9,400만원, **사용료수입**중 주차요금수입은 기정예산(86억 1,400만원)보다 9,500만원, **이자수입**중 기타이자수입은 기정예산(164억 400만원)보다 3,800만원 증액 요청하였으나, **사업수입**중 배당금수입은 기정예산(570억원)보다 △112억 2,800만원 감액 요청한 것임
- ②**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기정예산(1,480억 2,100만원)보다 1,272억 5,7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을 기정예산(2억 4,300만원)보다 1,2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기정예산(147억 8,300만원)보다 7억 3,100만원 증액요청하고, **보조금반환수입**은 기정예산(2,744억 6,400만원)보다 8억 7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정예산(1,349억 4,600만원)보다 15억 2,500만원 증액요청한 것임

〈표 3-2〉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세 외 수 입		1,484,052	124,407	1,608,459	
	경상적세외수입	869,024	△5,927	863,096	◦징수교부금수입 3,872 ◦재산임대수입 1,294 ◦사용료수입 95 ◦이자수입 38 ◦사업수입 △11,228
	임시적세외수입	572,460	130,334	702,795	◦재산매각수입 127,269 ◦기타수입 1,525 ◦보조금반환수입 807 ◦자치단체간부담금 73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3)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법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911억 8,400만원)보다 16억 2,9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교부세 편성요청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지 방 교 부 세	91,184	1,629	92,814
① 보 통 교 부 세	51,802	0	51,802
② 특 별 교 부 세	4,373	0	4,373
④소방안전교부세	35,009	1,629	36,639

- 당초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예상금액 사전통지에 따라 본예산에 350억 9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25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25년 1월 23일, 89억 2,900만원 증액한 439억 3,900만원으로 통보한 바,
- 금번 제1회 추경안에는 일반회계중 소방안전교부세 기정예산(350억 900만원)보다 16억 2,900만원이 증액된 366억 3,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회계연도중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교부될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도 요청된 바,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소방안전교부세 2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내역 통지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①	'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통보 ('25. 1.23)	'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②	증 · 감 ③=②-①
35,009	43,939	36,639	1,629

4)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511)의 경우, 기정예산(7조 4,815억 6,200만원)보다 0.9%, 647억 9,600만원 증액된 7조 5,463억 5,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국고보조금**(511-01)은 기정예산(7조 1,154억원)보다 571억 4,200만원 증액된 7조 1,725억 4,2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내시 등에 따라 세출예산중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271억 6,600만원),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125억원)등 26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고자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하고, **기초연금 지급**(△70억 1,400만원), **국가지정유산 보존·활용**(△20억 9,000만원)등 24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은 기정예산(695억 8,600만원)보다 43억 800만원 증액된 738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38억 8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3억 2,300만원)등 5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금**(511-03)은 34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기정예산(2,965억 7,500만원)보다 1.1%, 33억 4,400만원이 증액된 2,999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7,481,562	64,796	7,546,358		
국 고 보 조 금	7,115,400	57,142	7,172,542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7,166
				◦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12,500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6,344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038
				◦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43
				◦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2,916
				◦ 가정양육수당 지원	2,653
				◦ 국가유산 보수정비	2,577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810
				◦ 긴급복지지원사업	872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494
				◦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344
				◦ 북한산성 보수·정비	329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256
				◦ 청년 친화도시 조성	250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26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25
				◦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99
				◦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97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50

〈표 3-5B〉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고 보 조 금 등	7,481,562	64,796	7,546,358		
국 고 보 조 금	7,115,400	57,142	7,172,542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0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35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27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2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0
				○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10
				○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0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
				○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
				○ 유기동물보호 지원	△1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13
				○ 길고양이 중성화(TNR)(국비)	△22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23
				○ 국가하천 유지보수	△23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3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5
				○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경상)	△36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43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60
				○ 한양도성 성돌보존·관리	△91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00
				○ 농식품 바우처 지원	△255
				○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보수	△270
				○ 한양도성 숙정문인근 봉괴구간 성벽보수	△294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300
				○ 한양도성 보수·정비	△350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408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1,637
				○ 국가지정유산 보존·활용	△2,090
				○ 기초연금 지급	△7,014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보 조 금	69,586	4,308	73,895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3,808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23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00
				○ 마을기업 육성	65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12

〈표 3-5C〉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7,481,562	64,796	7,546,358		
기 금	296,575	3,344	299,920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 2025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 생애 초기 건강관리 ○ 통합정신건강증진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보조) ○ 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다문화가족) ○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 응급의료기관 지원 ○ 결핵 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 실시	1,200 450 395 329 309 248 179 120 111 99 82 62 42 32 23 20 19 13 12 12 10 8 5 1 0 0 △ 13 △ 19 △ 27 △ 38 △ 66 △ 105 △ 200 △ 337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3조 7,251억 5,100만원)보다 3.3%, 4,470억 3,300만원 증액된 14조 1,721억 8,4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다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622억 100만원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부터 192억 1,000만원을 전입받아 1,814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관련 조례는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기금(하수도사업 회전기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192억 1,000만원)하는 것은 현행 조례가 명시한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 기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편성요청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입금**(192억 1,000만원)은 재검토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6A〉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특 별 회 계	13,725,151	447,033	14,172,184	
공기업특별회계	1,940,112	267,600	2,207,712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30,000	86,189	1,116,189	◦순세계잉여금 86,828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38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10,112	181,411	1,091,523	◦순세계잉여금 162,201 ◦기금전입금 19,210
기타특별회계	11,785,039	179,432	11,964,471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816,460	△13,235	1,803,225	◦순세계잉여금 17,760 ◦예수금수입 △1,100 ◦기타회계전입금 △29,895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688,857	73,517	1,762,374	◦예수금수입 71,500 ◦국고보조금 16,444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99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79 ◦위탁비반환수입 1,84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70 ◦기타이자수입 456 ◦부담금 210 ◦기타회계전입금 △6,750 ◦순세계잉여금 △15,628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74,260	7,666	81,926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52 ◦순세계잉여금 2,814 ◦예수금수입 1,6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100,275	△112,306	2,987,969	◦위탁비반환수입 106,172 ◦공유재산임대료 67,5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71 ◦기타이자수입 856 ◦자치단체간부담금 48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8 ◦기금 △675 ◦국고보조금 △1,253 ◦예수금수입 △52,400 ◦순세계잉여금 △234,096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980,322	65,373	2,045,695	◦순세계잉여금 46,808 ◦그외수입 9,181 ◦국고보조금 7,287 ◦기금 1,423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75 ◦기타이자수입 197

〈표 3-6B〉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균형발전특별회계		249,960	△57,407	192,553	◦기타회계전입금 89,998
					◦순세계잉여금 15,317
					◦자치단체간부담금 252
					◦그외수입 206
					◦주차요금수입 4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
					◦공유재산임대료 △94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3,13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485	9,788	21,274	◦순세계잉여금 9,7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22,188	216,971	2,039,159	◦기타회계전입금 144,063
					◦국고보조금 69,748
					◦순세계잉여금 3,16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680	△564	29,116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51
					◦순세계잉여금 △197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18
소방특별회계		1,011,548	△10,372	1,001,175	◦기타회계전입금 6,797
					◦소방안전교부세 2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44
					◦순세계잉여금 △17,224

1)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인 바,
 - 특별회계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 1,622억 1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68억 2,8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경우,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회계가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 요청한 것으로,

- **수도사업특별회계**(868억 2,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468억 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31억 6,0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이나,
- **주택사업특별회계**(△2,340억 9,600만원), **소방특별회계**(△172억 2,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156억 2,8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1억 9,7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7〉 순세계잉여금 경정 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도 본기 예산액 ①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②	추경·감액 청구액 ③
교통사업특별회계	54,867	39,239	△15,628
주택사업특별회계	238,348	4,251	△234,096
도시개발특별회계	31,366	78,174	46,8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350	20,511	3,16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96	399	△197
소방특별회계	26,276	9,051	△17,224
수도사업특별회계	111,655	198,483	86,82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4회계연도 결산서」 및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인 바,
- 서울시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해당 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전년도 11월에 미리 다음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재정 여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고 있음에도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7개 특별회계에서 '25년도 세입예산안에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4개 특별회계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증·감편성을 요청한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에 국비 164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659억 7,600만원)보다 164억 4,4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에 국비 △12억 5,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114억 8,000만원)에 대해 국비 감액분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에 국비 83억 2,900만원, **서울 백제역사유적 보수정비**에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에 △13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1,068억 9,300만원)보다 72억 8,7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에 국비 697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9,498억 3,100만원)보다 697억 4,8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8〉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65,976	16,444	82,421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 (K-패스)(교통관리계정) 16,444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1,480	△1,253	10,227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 △1,253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06,893	7,287	114,181	-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8,329 - 서울 백제역사유적 보수정비 288 -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 △1,330
의 료 급 여 기 특 별 회 계	949,831	69,748	1,019,579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69,748

-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기금**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중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은 △6억 7,500만원 감액통보되어 기정예산(4,768억 9,200만원)보다 △6억 7,5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중 **가공배전선 지중화**는 14억 2,300만원 증액통보되어 기정예산(18억원)보다 14억 2,3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9〉 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476,892	△675	476,217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67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800	1,423	3,223	가공배전선 지중화 1,423

3)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가 세외수입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중 기타이자수입(4억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위탁비반환수입(18억 4,000만원), **지방행정재·부과금**중 부담금(2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4,931억 7,300만원)보다 25억 700만원 증액 편성요청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675억원), 기타이자수입(8억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자치단체간부담금(4억 8,000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3,800만원), 위탁비반환수입(1,061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1조 2,098억 1,300만원)보다 1,750억 4,700만원 증액 편성요청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중 기타이자수입(1억 9,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그외수입(9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441억 8,800만원)보다 93억 7,800만원 증액 편성요청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9,400만원 감액되고, 주차요금수입은 4,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1,631억 3,400만원 감액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2억 5,200만원)과 그 외수입(2억 600만원)은 증액되어 기정예산(1,913억 6,200만원)보다 △1,627억 2,800만원 감액 편성요청된 것임

〈표 3-10〉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교통 사업 특별 회계	493,173	2,507	495,681	◦ 기타이자수입 456	
				· 알뜰교통카드등 위탁비 이자반환 (교통관리계정) 456	
				◦ 위탁비반환수입 1,840	
				· 알뜰교통카드 등 위탁비반환(교통관리계정) 1,840	
				◦ 부담금 210	
·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교통관리계정) 210					
주택 사업 특별 회계	1,209,813	175,047	1,384,861	◦ 공유재산임대료 67,500	
				· 재개발/재건축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67,500	
				◦ 기타이자수입 856	
				· '24년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856	
				◦ 자치단체간부담금 480	
				·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480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8	
				· 사회주택 공급 38	
				◦ 위탁비반환수입 106,172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등 95,172	
·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 집행잔액 11,000					
도시 개발 특별 회계	44,188	9,378	53,566	◦ 기타이자수입 197	
				·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선금금 약정이자 197	
				◦ 그외수입 9,181	
				· 판결금 환수액 2,214	
				· 남산곤돌라 설치공사 미사용 선금 반환 6,967	
균 형 발 전 특별 회 계	191,362	△162,728	28,633	◦ 공유재산임대료 △94	
				· 서울혁신파크 공간사용료 △94	
				◦ 주차요금수입 41	
				· 서울혁신파크 주차요금 41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3,134	
				·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수입 △163,134	
				◦ 자치단체간부담금 252	
				· 환경유수지 임대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92	
				· 노해로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60	
				· 성산로알대 압축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100	
				◦ 그외수입 206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및 공공요금 206					

○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조 3,651억 8,600만원)보다 2,253억 3,300만원 증·감하고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규모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계		4,365,186	225,333	4,590,160	
도	시 철 도 건 설	696,681	△30,995	665,685	◦기타회계전입금 △29,895
사	업 비				·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29,895
특	별 회 계				◦예수금수입 △1,1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100
교	통 사 업	1,074,839	66,219	1,141,058	◦기타회계전입금 △6,750
					·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6,75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70
					· 서울사교육청 합동 보호구역개선(교통관리계정) 1,470
					◦예수금수입 71,5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교통관리계정) 71,500
광	역 교 통 시 설	62,700	1,600	64,300	◦예수금수입 1,600
특	별 회 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600
주	택 사 업	711,922	△52,400	659,522	◦예수금수입 △52,400
특	별 회 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2,400
군	형 발 전	0	89,998	89,998	◦기타회계전입금 89,998
특	별 회 계				· 일반회계전입금 89,998
의	료 급 여 기 금	849,892	144,063	993,955	◦기타회계전입금 144,063
특	별 회 계				·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 144,063
한	강 수 질 개 선	1,207	51	1,258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51
특	별 회 계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51
소	특 별 회 방	967,945	6,797	974,742	◦기타회계전입금 6,797
					· 지역자원시설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84
					· 지역자원시설세(인건비계정) 36
					· 소방안전교부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1,222
					· 일반회계전입금(인건비계정) 5,454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경예산안의 특징

- 지난 5월 26일 제출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가 운용 중인 13개 회계, 428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4-1〉 추경안을 통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세부사업 수

(단위 : 개)

구분	합계	증액조정이 요청된 사업수			감액조정이 요청된 사업수	기타 ^{주3)} 사업수
		소계	'25년도 예산 신규편성 ^{주1)}	그 밖의 증액편성 ^{주2)}		
합계	428	330	81	249	95	3
정책사업 ^{주4)} 에 대한 증감요청	335	254	36	218	78	3
시비만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업	233	189	26 ①	163 ②	44 ③	-
국비 교부규모 변경으로 인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업						
소계	102	65 ④	10	55	34 ⑤	3
국고보고금등 변경 ^{주5)}	99	65	10	55	34	-
소방안전교부세 변경 ^{주6)}	3	-	-	-	-	3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증감요청	4	3	-	3	1	-
재무활동에 대한 증감요청	79	71	45	26	8	-
예비비에 대한 증감요청	10	2	-	2	8	-

※ 주1) 기정예산이 0인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을 통해 '25년도 예산이 신규편성 요청된 것임

주2) 기정예산이 존재하나, 금번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이 요청된 것임

주3)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액의 총규모는 동일하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증액조정 요청하고 그 만큼 시비를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주4)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주5) 국고보조금 등[국고보조금(511-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기금(511-03) 포함]의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조정이 요청된 것임

주6) 지방교부세(311) 중 소방안전교부세 (311-04)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조정이 요청된 것임

- 추경예산안중 233개 세부사업은 시비만 증·감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① 26개 세부사업은 시비를 신규 편성요청하고, ② 163개 세부사업은 기정 예산보다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③ 44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사업추진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시비에 대해 감액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시의회가 본예산을 의결('24.12.13)한 이후 국회가 '25년도 예산을 의결('24.12.10)하고 및 추경예산('25. 5. 1)을 의결하며 중앙정부가 확정·변경내시 등을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규모가 변경되어, 102개 세부사업에 대해 국비 또는 국·시비를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그 밖에도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변경 등을 사유로 4개의 행정업무경비에 대해 증·감조정이 요청되었으며,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규모 등을 반영하여 재무활동(79개)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하고, 각 회계의 재정운영규모 변동과 연동하여 예비비의 규모를 경정하고자 10건의 증·감조정이 요청된 것으로 검토됨

○ 관련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칙의 경우에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③ 회계연도 중 사업의 실제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감액조정을 요청한 44개 세부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고 있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됨

■ 다만, 균형발전본부 소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경우, '24년 10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사업추진이 제한되어 기정예산(393억 6,200만원)에서 곤돌라 설치 등과 관련된 소요예산 △268억 2,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 우리 위원회는 본예산 심사시 소용 진행과정에 따라 집행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를 존중하여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현재 동 사업은 공사중 장애로 인한 감액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별 소요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회계연도내 지출가능한 규모에 한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2A〉 시비만 감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감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균형발전본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39,362	△26,829	12,533
주택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x54,873) 104,633	(x-) △17,076	(x54,873) 87,557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x45,700) 162,071	(x-) △8,507	(x45,700) 153,564
주택실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77,144	△7,800	169,344
물순환안전국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빗물배수터널)	9,000	△6,000	3,000
미래공간기획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8,202	△5,572	2,63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x26,700) 76,749	(x-) △4,798	(x26,700) 71,951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4-2B〉 시비만 감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감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재난안전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7,571	△4,600	2,971
소방재난본부	119 항공대 운영	11,642	△2,300	9,342
여성가족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34,240	△1,800	32,440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 운영	4,734	△1,800	2,934
재난안전실	이수과 천복합터널 건설	2,700	△1,800	1,200
소방재난본부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2,023	△1,476	547
재난안전실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6,368	△1,369	4,999
관광체육국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1,707	△1,300	407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6,861	△1,283	5,578
물순환안전국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2,700	△1,200	1,500
평생교육국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219,298	△1,122	218,176
재난안전실	긴급도로 개선	3,100	△1,000	2,100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 국비 교부규모가 변경되어 증·감조정을 요청한 세부사업은 102개 사업으로, 이 중 ⑤ 국고보조금의 감액통보 등에 따라 감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검토됨

- 문화본부 소관 **국가지정유산 보존·활용**을 포함한 6개 사업은 지난 2월, 국가유산청의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국비와 시비에 대한 감액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고 있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됨

〈표 4-3〉 국비 규모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억원 이상 감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복지실	기초연금지급	(x3,174,136) 3,520,535	(x△7,014) △7,780	(x3,167,121) 3,512,754
여성가족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x8,266) 27,556	(x△1,408) △4,692	(x6,858) 22,862
문화본부	국가지정유산보존·활용	(x25,565) 36,238	(x△2,090) △2,688	(x23,475) 33,550
시민건강국	전국민마음투자지원	(x10,129) 15,224	(x△1,637) △2,447	(x8,492) 12,777
문화본부	풍납토성복원(보수·정비)	(x9,654) 13,792	(x△1,330) △1,900	(x8,324) 11,892
주택실	재개발매입임대형리츠 국고보조금지원	(x10,797) 10,797	(x△1,253) △1,253	(x9,543) 9,543
주택실	공공주택건설	(x949) 1,779	(x△949) △949	(x-) 829
시민건강국	필수예방접종무료지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x36,026) 78,056	(x△337) △731	(x35,688) 77,325
시민건강국	농식품바우처지원	(x3,099) 6,714	(x△255) △553	(x2,844) 6,161
문화본부	한양도성보수·정비	(x2,859) 4,085	(x△350) △500	(x2,509) 3,585
문화본부	한양도성숙정문인근 봉괴구간성벽보수	(x504) 720	(x△294) △420	(x210) 300
문화본부	한양도성인왕곡성성곽보수	(x970) 1,387	(x△270) △387	(x700) 1,000
시민건강국	의료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지원	(x901) 1,352	(x△200) △300	(x701) 1,052
문화본부	한양도성성돌보존·관리	(x245) 350	(x△91) △130	(x154) 220
복지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x60) 121	(x△60) △121	(x-) -
시민건강국	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x2,988) 2,988	(x△105) △105	(x2,883) 2,883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 또한, 금번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사업중 재난안전실 소관 **가공배전선 지중화**를 포함한 68개 사업은 ④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통보되어 대응편성을 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표 4-4〉 국비 규모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복지실	의료급여사업운영	(x949,831) 1,822,188	(x69,748) 216,971	(x1,019,579) 2,039,159
여성가족실	부모급여지원	(x229,843) 426,488	(x27,166) 50,408	(x257,010) 476,896
교통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x39,825) 99,562	(x16,444) 41,112	(x56,270) 140,675
복지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활동지원급여	(x354,102) 683,620	(x6,344) 24,382	(x360,446) 708,003
여성가족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x130,071) 366,373	(x6,038) 19,947	(x136,109) 386,321
경제실	서울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추진	(x43,998) 65,648	(x12,500) 12,500	(x56,498) 78,148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x90,944) 129,920	(x8,329) 11,899	(x99,273) 141,819
여성가족실	영유아보육료지원	(x298,076) 553,402	(x5,943) 11,028	(x304,019) 564,430
복지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활동지원가산급여	(x8,627) 14,324	(x2,916) 5,348	(x11,544) 19,672
여성가족실	가족양육수당지원	(x12,820) 23,788	(x2,653) 4,922	(x15,473) 28,711
여성가족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x19,827) 103,772	(x1,810) 4,768	(x21,637) 108,540
재난안전실	가공배전선지중화	(x-) 3,260	(x1,423) 3,830	(x1,423) 7,091
문화본부	국가유산보수정비	(x7,309) 11,189	(x2,577) 3,790	(x9,887) 14,979
여성가족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x12,060) 18,466	(x3,808) 3,762	(x15,869) 22,209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x-) 1,791	(x1,200) 1,600	(x1,200) 3,391
복지실	긴급복지지원	(x26,902) 40,353	(x872) 1,308	(x27,774) 41,661

※ ① 10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한 사업과 ②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결산시 국비가 내시액보다 부족 수령되었다는 사유로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시비를 신규 편성요청한 세부사업과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요청한 세부사업중 일부 사업의 경우, 편성요청한 사업내용이 지난 5월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관련 자료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민생안정·도시안전·미래투자”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추경편성의 필요성과 추경 재원의 한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5A〉 시비만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물 순환 안전국	노 후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	80,876	80,876
교 통 실	송 파 공 영 차 고 지 정 비 및 세 차 동 이 전 공 사	-	4,400	4,400
물 순환 안전국	지 반 침 하 예 방 을 위 한 30년이상 원형하수관로 전수조사	-	3,000	3,000
여 성 가 족 실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지원	-	1,700	1,700
재 난 안 전 실	우 선 정 비 구 역 도 고 도 화	-	1,000	1,000
물 순환 안전국	중 량 하 수 처 리 구 역 공 공 하 수 관 로 기 술 진 단	-	1,000	1,000
미 래 한 강 본 부	수 상 기 반 시 설 선 착 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	-	830	830
시 민 건 강 국	공 공 병 원 경 영 혁 신 지 원	-	720	720
복 지 실	노 숙 인 등 자 활 작 업 장 조 성	-	600	600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4-5B〉 시비만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재난안전실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	600	600
교통실	교통유발부담금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통합	-	597	597
시민건강국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	500	500
물순환안전국	서남물재생센터 상용전력설비 구축사업	-	473	473
물순환안전국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성능진단 용역	-	264	264
문화본부	(가칭) 보이는 수장고 개관대비 기반조성	-	250	250
경제실	서울형 이음공제	-	210	210
민생노동국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지원	-	210	210
미래공간기획관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10	210
건설기술정책관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	199	199
물순환안전국	수변활력거점 명소화	-	190	190
여성가족실	검소하고 실속있는 결혼문화 조성	-	160	160
물순환안전국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3단계) 민간투자사업	-	110	110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	110	110
정원도시국	응봉근린공원(성동) 조성	-	100	100
물순환안전국	지하수 보조측정망 측정연보 발간 및 지하수 모니터링	-	78	78
도시기반시설본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9호선연장)	-	50	50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4-6A〉 시비만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행 정 국	조 정 교 부 금	4,288,123	111,363	4,399,487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1,760,384	90,156	1,850,540
평 생 교 육 국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817,977	84,930	1,902,908
시 민 건 강 국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30,374	31,316	61,690
민 생 노 동 국	서 울 신 용 보 증 재 단 출 연	14,120	28,500	42,620
복 지 실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195,551	21,500	217,051
교 통 실	기 후 동 행 카 드 운 영	108,889	21,094	129,983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량 물 재 생 센 터 시 설 현 대 화 (2 - 1 단 계)	13,509	19,210	32,719
재 무 국	시 세 징 수 교 부 금	516,092	18,933	535,025
물 순 환 안 전 국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00	10,529	22,329
물 순 환 안 전 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8,744	10,329	209,073
시 민 건 강 국	코 로 나 1 9 백 신 접 종 실 시	(x23,419) 40,742	(x-) 10,000	(x23,419) 50,742
물 순 환 안 전 국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0	9,944	19,944
물 순 환 안 전 국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3,200	9,533	22,733
정 원 도 시 국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53,598	7,601	61,199
여 성 가 족 실	임 산 부 교 통 비 지 원	25,684	7,300	32,984
물 순 환 안 전 국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900	7,200	13,100
물 순 환 안 전 국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700	7,077	10,777
민 생 노 동 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25,553	6,757	32,311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뿐만 아니라 신규편성 요청된 사업도 제외한 것임

〈표 4-6B〉 시비만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물 순환 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62,855	6,347	69,202
물 순환 안전국	용산-2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500	6,317	14,817
시민건강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	27,805	5,535	33,341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8,955	5,090	14,045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7,349	4,874	12,223
물 순환 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5,156	4,200	9,356
문화본부	서울문화유산센터 건립	21,192	3,805	24,997
물 순환 안전국	종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0	3,700	13,700
복지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8,604	3,644	42,248
주택실	추진위 / 조합 공공 지원	1,983	3,518	5,501
재난안전실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1,350	3,500	4,850
도시공간본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202	3,409	3,611
주택실	공공정비계획 수립	5,619	3,369	8,988
여성가족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x6,333) 36,392	(x-) 3,131	(x6,333) 39,523
경제실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15,797	3,100	18,897
물 순환 안전국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4,289	2,895	7,184
디지털도시국	서울 AI 재단 출연	10,857	2,889	13,747
평생교육국	담배소비세 전출	246,269	2,855	249,124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사업 추진	9,555	2,612	12,168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뿐만 아니라 신규편성 요청된 사업도 제외한 것임

〈표 4-6C〉 시비만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여 성 가 족 실	서 울 형 산 후 조 리 경 비 지 원	15,923	2,525	18,449
미 래 공 간 기 획 관	시 청 역 지 하 공 간 기 반 시 설 조 성	1,800	2,500	4,300
평 생 교 육 국	서 울 중 장 년 가 치 동 행 일 자 리 확 충	23,751	2,178	25,930
재 난 안 전 실	노 후 포 장 도 로 정 비	91,483	1,872	93,355
디 지 털 도 시 국	인 공 지 능 행 정 서 비 스 구 축·운 영	446	1,868	2,314
민 생 노 동 국	소 상 공 인 온 라 인 판 로 개 척 지 원	2,273	1,500	3,773
교 통 실	어 린 이 보 호 구 역 개 선 (전 환 사 업)	22,253	1,470	23,723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 치 경 찰 공 무 원 후 생 복 지 증 진 및 근 무 환 경 개 선	2,005	1,412	3,417
경 제 실	서 울 경 제 진 흥 원 출 연	58,320	1,400	59,720
여 성 가 족 실	어 린 이 집 운 영 지 원 (자 체)	53,218	1,366	54,584
복 지 실	서 울 형 긴 급 복 지 지 원	14,259	1,300	15,559
물 순 환 안 전 국	차 집 관 로 보 수 공 사	13,200	1,200	14,400
여 성 가 족 실	아 동 복 지 시 설 운 영 지 원	101,638	1,168	102,806
여 성 가 족 실	서 울 형 아 이 돌 붐 비 지 원	7,484	1,110	8,594
재 난 안 전 실	도 로 편 입 용 지 에 대 한 손 실 보 상	9,000	1,055	10,055
여 성 가 족 실	서 울 형 가 사 서 비 스 지 원	3,926	1,050	4,976
경 제 실	중 소 기 업 매 출 채 권 보 험 료 지 원	1,496	1,000	2,496
경 제 실	수 출 보 험 (보 증) 료 지 원	1,500	1,000	2,500
경 제 실	홍 룡 바 이 오 의 료 앵 커 운 영	13,809	1,000	14,809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뿐만 아니라 신규편성 요청된 사업도 제외한 것임

-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시의회가 삭감한 경비에 대해 복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소요예산이 금번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사업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7〉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경비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사결과			추경안 편성현황		
		예산안	감액	예산서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교 통 실	기후동행카드 운영	110,889	△2,000	108,889	108,889	21,094	129,983
		○ 한강버스 연계 할인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20억원 삭감			○ 이용자 증가 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210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		
물순환안전국	천 호 - 1 소 구 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800	△1,000	11,800	11,800	10,529	22,329
		○ 집행가능규모로 조정하고자 △10억원 삭감			○ 2차분 공사가 9월중 준공예정으로 추가 공사비 105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		
시민건강국	코 로 나 1 9 백 신 접 종 실 시	50,742	△10,000	40,742	40,742	10,000	50,742
		○ 코로나19 감염률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사업축소(△100억원 삭감), 필요시 실제 접종율을 고려하여 추경반영			○ 접종 목표를 초과에 따른 실질적인 접종 수율을 반영하여 100억원 증액 편성 요청		
민생노동국	서 울 특 별 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25,853	△300	25,553	25,553	6,757	32,311
		○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지원 △3억원 삭감			○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67억 5,7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64,255	△1,400	62,855	62,855	6,347	69,202
		○ 하수슬러지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을 감액조정(△14억원 삭감), 필요시 추경을 통해 반영			○ 전기요금 단가상승 및 하수슬러지폐기물 위탁처리량 증가 등으로 63억 4,700만원 증액편성요청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8,376	△3,220	5,156	5,156	4,200	9,356
		○ 공사물량 조정하고 필요시 추경 반영			○ 당초 본예산에도 일부만 편성하였고, 현장 조사결과 설계내용과 차이가 있어 공법 변경필요한 사점		
주 택 실	공 공 정 비 계 획 수 립	6,039	△420	5,619	5,619	3,369	8,988
		○ 물량 감소가 예상되어 일부 감액			○ 입안요청제 법제화 등 신통기획 전면 활성화로 선정 물량 증가		
여성가족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지원)	36,683	△291	36,392	36,392	3,131	39,523
		○ 과다추계된 인건비 일부 감액			○ 지원단가 조정되어 증액필요		

※ 자료근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24.12)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563 ('25. 6.11) 등 재구성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시가 제출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당초 본예산 심사시 의결('24.12.13)된 예산총칙 중 **세입·세출 예산총액(제1조)**과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를 수정요청한 것으로,
 -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 중 세입·세출 예산총액(제1조)과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를 연동하여 경정하려는 것임
-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을 통해 정한 총액(48조 1,144억 5,500만원)을 49조 7,691억 1,8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48조 1,544억 6,400만원)보다 1조 6,146억 5,400만원 증액된 49조 7,691억 1,800만원을 편성요청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총액도 동일한 규모(49조 7,691억 1,800만원)로 조정을 요청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8〉 본예산과 추경안 간 예산총칙 제1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총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총칙 제1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총액		증감	
	'25년도 본예산	'25년도 제1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8,114,455	49,769,118	1,654,662	3.4
일반회계	34,418,927	35,596,933	1,178,005	3.4
특별회계	13,695,527	14,172,184	476,657	3.4
공기업특별회계	1,940,112	2,207,712	267,600	13.7
수도사업특별회계	1,030,000	1,116,189	86,189	8.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10,112	1,091,523	181,411	19.9
기타특별회계	11,755,415	11,964,471	209,056	1.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816,460	1,803,225	△13,235	△0.7
교통사업특별회계	1,688,357	1,762,374	74,017	4.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4,260	81,926	7,666	10.3
주택사업특별회계	3,075,836	2,987,969	△87,866	△2.8
도시개발특별회계	1,975,637	2,045,695	70,057	3.5
균형발전특별회계	249,960	192,553	△57,407	△22.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485	21,274	9,788	85.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22,188	2,039,159	216,971	11.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680	29,116	△564	△1.9
소방특별회계	1,011,548	1,001,175	△10,372	△1.0

※ 자료근거 : '25년도 예산서 및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총칙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1,139억 4,400만원)보다 100억원 증액된 1,239억 4,400만원으로 경정하려는 것으로,

- 일반회계의 예비비 중 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 본예산(200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되 ② 일반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조정과 연동하여 본예산(939억 4,400만원)보다 100억원 증액된 1,039억 4,400만원으로 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4-9〉 본예산과 추경안 간 일반회계의 예비비와 예산총액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25년도 본예산		'25년도 제1회 추경안		증감	
	일반회계 예비비 (구성비) ^{주1)}	일반회계 예산총액	일반회계 예비비 (구성비) ^{주1)}	일반회계 예산총액	예비비 증감액 (증감률) ^{주2)}	예산총액 증감액 (증감률) ^{주2)}
합 계	113,944 (0.33)		123,944 (0.34)		10,000 (8.77)	
일 반 예 비 비	93,944 (0.27)	34,418,927	103,944 (0.29)	35,596,933	10,000 (10.64)	1,178,005 (3.42)
재 해 · 재 난 목 적 예 비 비	20,000 (0.05)		20,000 (0.05)		- (0.00)	

※ 주1) (구성비)는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주2) (증감률)은 추경안의 예비비와 예산총액이 본예산과 비교할 때 증감된 비율임

자료근거 : '25년도 예산서 및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비비는 관련법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자금으로서 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편성한도가 없으나, ② **일반예비비**의 경우에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 추경안의 경우, 일반회계에 예산총액(35조 5,969억 3,300만원) 대비 0.29%에 해당하는 일반예비비(1,039억 4,4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 이내)가 준수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금번 추경안을 통해 편성요청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의 규모(1,039억 4,400만원)는 당초 본예산(939억 4,400만원)보다 10.6% 증액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35조 5,969억 3,300만원)이 본예산(34조 4,189억 2,700만원)보다 3.4% 증액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증액편성된 규모로 판단할 수 있으나,

- '25년 4월,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보고한 1분기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을 검토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939억 4,400만원) 중 64.1%, 602억 5,400만원이 이미 1분기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최근 10년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의 분기별 평균 지출액(181억 8,100만원)을 고려하면 2·3·4분기의 예비비 지출수요에 대해 1분기에 사용승인되지 않은 잔여 예비비(336억 8,900만원)만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제출안과 같이 증액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다만,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의 경우, 지방채 발행규모를 본예산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0〉 '2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및 본예산 편성현황^{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한도액	기본 한도액	별도 한도액
'2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2,686,358	1,544,400 ^{주2)}	1,141,958 ^{주3)}
본 예산 편 성 현 황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입내역	세입과목	예산액	기본 한도 내 편성액
				별도 한도 내 편성액
총	계		1,690,765	848,800
일	회	계	150,000	75,000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모집공채	150,000	75,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소계	938,458	228,000
교통통실 (도시철도과)	노후전동차 교체	모집공채	75,000	75,000
	도시철도공채 차환	모집공채	87,000	43,500
	도시철도매출공채	매출공채	666,958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모집공채	89,500	89,500
	9호선 4단계 건설	모집공채	20,000	20,000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소계	433,000	216,500
주택실 (주택정책과)	지방채 차환	모집공채	108,000	54,000
주택실 (주거정비과)	지방채 차환	모집공채	325,000	162,500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계	412,400	272,400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	2,400	2,400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차환	모집공채	280,000	140,00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모집공채	40,000	40,0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모집공채	30,000	30,0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	모집공채	25,000	25,000
	양재대로 구조개선	모집공채	25,000	25,000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모집공채	10,000	10,000

주1) “본예산 편성현황”은 '25년도 예산서(본예산)의 ① 예산총칙(제4조)과 ② 세입예산 중 지방채 편성내역을 정리한 것임
- 금번 추경안의 경우, 지방채에 대해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의 조정이 요청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규모가 본예산과 동일함

주2) 기본 한도액(1,544,400,000천원) 세부산출내역 : [경상일반재원(25,483,214,048천원) - 채무잔액(11,442,497,734천원)] × 11%

주3) 별도 한도액(1,141,958,200천원) 세부산출내역 : 도시철도공채 발행액(666,958,200천원) + 차환채 발행액의 50%(475,000,000천원)

※ 자료근거 : ① '25년도 예산서 및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②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8440 ('24. 7.15)

③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1036 ('24. 9. 4) 등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 '25년도 본예산의 경우, 한도액(2조 6,863억 5,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1조 6,907억 6,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① **예산총칙 제4조(공채발행 및 차입금)**에는 회계별 지방채 발행규모를, ② **세입예산**에는 개별적인 발행내역(세입내역)과 발행액(예산액)을 명시하여 시의회의 의결('24.12)을 얻은 것으로,

-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내역과 발행규모를 당초 본예산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예산총칙 제4조(공채발행 및 차입금)**와 **세입예산**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457억원)와 시비(268억 7,100만원) 그리고 지방채(895억원)를 포함한 1,62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1,620억 7,100만원) 중 시비 △85억 700만원을 감추경 요청하고,

■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에 국비(267억원)와 시비(300억 4,900만원) 그리고 지방채(200억원)를 포함한 76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767억 4,900만원) 중 시비 △47억 9,800만원을 감추경 요청한 바,

〈표 4-11〉 소요예산 중 지방채가 포함된 세부사업에 대한 감추경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회계명)	예산구분	소요예산			
			계	국비	시비	지방채
도시기반 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본 예산	162,071	45,700	26,871	89,500
		제1회 추경안	153,564	45,700	18,364	89,500
		증 감 액	△8,507	-	△8,507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본 예산	76,749	26,700	30,049	20,000
		제1회 추경안	71,951	26,700	25,251	20,000
		증 감 액	△4,798	-	△4,798	-

※ 자료근거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소요예산의 규모가 감소되어 감추경을 추진한다면 추경안 제출시점('25. 5.26)까지 발행되지 않은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감액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는 금번 추경을 통해 **예산총칙 제4조(공채발행 및 차입금)와 세입 예산**에 명시된 지방채를 감액조정 하기보다는 소요예산 중 시비 편성분에 대해 우선하여 감액요청하고 있어 시비 감추경으로 세출재원은 확보될 것이나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재정 운용방안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법정경비 등의 정산

- 관련법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 ① 지방세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정산금,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④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 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전출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산하고 있는 바,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9,290억 2,800만원)에 대해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2,103억 5,200만원)을 정산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요청하고, ②법정정산에 따라 교육청에 대해 전출하여야 할 2,479억 4,200만원 중 금번 추경안을 통해 1,779억 4,200만원을 전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700억원을 향후 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관련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9,290억 2,800만원에서 법정정산분(3,582억 9,400만원)을 차감한 가용재원(5,707억 3,400만원) 중 50.0%에 해당하는 2,853억 6,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할 2,479억 4,200만원중 1,779억 4,2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2,853억 6,700만원)후 남게되는 실제 가용재원은 2,553억 6,700만원으로 검토됨

〈표 4-12〉 법정정산 등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액	비고
계			929,028	
법 정 의 무 경 비 편 성 액			388,294	
자 치 구 정 산 금	소 계		210,352	
		조 정 교 부 금	111,363	보통세 × 22.6% + 레저세 장외발매분 × 20% +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 65% - 지급한 시세징수교부금
		재 정 보 전 금	80,055	특별시분 재산세 × 100%
		시세징수교부금	18,933	자치구 위임 시세 징수액 × 3.0%
	소 계		177,942	
		지 방 세 전 출	90,156	보통세(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재산세 제외) × 10.0% 인 1,301억 5,600만원 중 400억원 향후 정산필요
		담배소비세전출	2,855	담배소비세의 45.0%
교 육 청 전 출 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지방교육세전출	84,930	지방교육세의 100% 인 1,149억 3,000만원 중 300 억원 향후 정산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285,367	순세계잉여금중 법정 의무경비 정산후 잔액의 50.0%
가용재원 (여유재원)			255,367	교육청 전출금 미편성에 따른 가용재원(700억원) 증가

4.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여성가족실

□ 임신부 교통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17)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회보장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기정예산(256억 1,300만원)보다 7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3〉 임신부 교통비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25,684	7,300	32,984	
사회복지사업보조	25,613	7,300	32,913	○ 임신부 교통비 지원 = 73억원
사무관리비	20	-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	-	11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4	-	1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	-	2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7

- 동 사업은 임신부가 교통비 바우처 신청시 선택한 교통카드를 통해서 유류비,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교통비를 포인트(현금)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최초 시행하여 사회보장협의를 '21년 12월 이행한 바
-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대상 요건 및 사용처 등을 확대하여 '24년 4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충전도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내용을 보완한 바 있음

- 관련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특히, 사회보장 사업 대상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바, ①'22년도에는 지원대상을 다문화 가족으로 확대하였고, ②'23년도에는 철도, 기후동행카드 충전 추가, 수소차 충전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변경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관련 협의는 저출생 대책 등 사회보장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서비스의 중복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법으로 사회보장제도 변경시에도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 이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동 사업중 변경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관련법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4〉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전 주민 지원 외 복지사업)은 모두 301-02에 편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2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21)

- 동 사업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월평균 신청률이 9% 증가하여 시 분담분 25억 2,500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5〉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15,923	2,525	18,44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913	2,525	18,439	○ 산후조리경비 지원 - 1,000,000원*5,051명*50% (시 분담률) 2,525
사무관리비	10	-	1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5. 5), p.21

- 동 사업은 사회보장 사업으로 '23년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이행하였고, '24년 6월에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이후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중 본인부담이 없는 서비스는 전무함’을 사유로 추가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재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경비에 대한 수혜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시·구비를 5:5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여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나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6〉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전 주민 지원 외 복지사업)은 모두 301-02에 편성 ※ <u>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2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u>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지원(사업별설명서 p.83)

- 동 사업은 주말에 특화된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17억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이나 3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17〉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	1,700	1,700	
행사운영비	-	1,700	1,700	○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1,700 106,250,000원*16개소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21

- 첫째,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 사업부서도 동 사업의 추진 근거를 관련 조례로 명시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였음
 - 그러나 동 조례 제7조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범주를 정한 것으로 주말특화 서울형 실외 키즈카페 사업의 근거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실내에 한해 운영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실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안이 지난 3월 제출된 바 있어 조례의 의결 결과와 연동하여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동 사업은 조례 근거 미비 및 시범운영 단계를 사유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방침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셋째,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신규 행사성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앞서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투자사업 심사 대상인 경우 사전심사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행사성) 사업으로 관련 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심사 결과, 안전 대책 마련 및 하반기 운영기간에 비해 과도한 예산편성, 실외 공간에서 키즈카페 운영시 기상 악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투심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여부가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기획조정실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사업별설명서, p.204)

- 동 사업은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총괄관의 수당을 지출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의 방침 및 규제총괄관 선발공고에 따르면 3급 공무원 상당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인사를 위촉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당도 3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여 책정한 것으로 검토됨

〈표 4-1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계				20	
사	무	관	리	비	20
◦ 규제총괄관 수당 52,474원 * 8시간 * 2일 * 4주 * 6개월 = 20,151천원				20	

- 사업부서는 규제총괄관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편성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중 운영수당으로 편성하고, 동 수당을 심사수당 성격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표 4-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

201-01. 사무관리비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라. 시험관리비

마.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97

- 그러나 관련 조례는 규제총괄관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서가 수립한 사전 계획(방침)만으로는 수당 지급의 근거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련 규칙도 지난 6월 11일에서야 입법예고를 마쳐 규제총괄관의 수당에 대한 지출 근거가 현재로서는 불비(不備)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조례와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 그리고 규제총괄관 선발공고에 따르면 신규로 위촉되는 규제총괄관은 민간전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신규로 운영되는 규제총괄관 선임·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조례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계획에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사업부서가 규제총괄관 위촉 및 제도운동을 위해 수립한 방침에는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일반적인 근로자는 주당 40시간, 한 달 160시간을 근무하게되나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민간전문가 규제총괄관은 한 달에 단 64시간만 근무하며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민간전문가를 선정하고자 하면서 ①지출근거가 되는 시행규칙은 불비되어 있고, ②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명시 사항마저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후 편성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0〉 관련 조례^{주1)}에 근거한 명시사항 반영 여부

조례내용	운 영 계 획
역할과 업무범위 (제5조제1호)	주요역할 : 규제개혁 정책 수립 및 개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제5조제2호)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선정방법 (제5조제3호)	선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준용
권한과 책임 (제5조제4호)	해당없음
결격 및 해촉사유 (제5조제5호)	해촉사유 : 관련 조례에 따름 해지방법 : ①위촉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 ②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위촉 해지 신청서 청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6호)	운영관련 소요예산 : ※ 추경 편성 필요 ○ 자문수당 : 20,150천원 - 3,358,330원(월별) X 6개월 = 20,149,980원

※ 주1)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제실

□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p.241)

- 동 사업은 미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수출피해를 최소화 하고, AI 로봇쇼의 내실있는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출연금 14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계				1,400
	출	연	금	1,400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하이서울기업지원 ◦ 글로벌커머스사업운영 ◦ 서울AI로봇쇼 개최 ◦ 디지털 역량(AI)교육운영 지원			600 130 270 300 100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금번 증액요청된 출연금은 기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증액요청한 것으로, 출연금중 디지털 역량(AI)교육운영 지원 (1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서울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의 조례명과 재단의 업무 등을 개정하고, 5월 21일, 서울AI재단을 출범하며 AI 중심의 행정·시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AI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 관련 조례에도 재단의 사업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을 명시하고 있어

- 신규 추진하려는 “디지털 역량(AI)교육운영 지원”의 경우에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아닌 서울AI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복지실

□ 부적정 예산과목 등 수정 필요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사업별설명서 p.330)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사업별설명서 p.334)

○ 관련법 등에 근거한 사회보장 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요청한 것이며

〈표 4-22〉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x13,515) 27,031	(x494) 988	(x14,010) 28,020	
자 치 단 체 경상보조금	(x13,515) 27,031	(x494) 988	(x14,010) 28,020	○ 바우처 사업비 988,274,000원 98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330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3억 8,2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4-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x354,102) 683,620	(x6,344) 24,382	(x360,446) 708,003	
자 치 단 체 경상보조금	(x354,102) 683,620	(x6,344) 24,382	(x360,446) 708,003	○ 국고보조사업 24,382,963,000원 24,38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335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는 모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가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4〉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 예시) 국고보조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보철구 제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 국고보조사업 예산은(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포함) 모두 301-01 통계목에 편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보조하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모두 301-01 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5) 교통실

□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별설명서 p.415)

- 동 사업은 기정예산(1,088억 8,900만원)보다 210억 9,400만원 증액된 1,299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4-25〉 기후동행카드 운영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사업내역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추경사유
계		108,889	21,094	129,983	
사무관리비		54	-	54	
	홍보물제작및 문자발송등	54	-	54	-
연구용역비		250	-	250	
	본사업효과검증 및발전전략용역	250	-	250	-
민간경상 사업보조		108,585	21,094	129,679	
일반권	운송손실금지원	90,000	20,000	110,000	① 이용자 증가(월 50만명→60만명) 에 따른 증액 : 200억원
	수수료	1,200	-	1,200	-
청년할인		10,500	1,094	11,594	② 제대군인 청년할인 기간 연장(최대 3년에 따른 증액 : 4억 2,000만원 ③ 만 13~18세 청소년에 대한 청년할인 적용에 따른 증액 : 6억 7,400만원
단기권		3,375	-	3,375	-
수도권확대		3,240	-	3,240	-
한강버스연계		270	-	270	-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416
 ②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1550('24.12.30) “2025년 기후동행카드 실행 계획”
 ③ '25년도 예산서 및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구성

- ① **일반권 이용에 따른 운송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월간 이용자 수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추계한 것(50만명)보다 10만명 증가되어 2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 **청년할인에 따른 추가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② '25년 1월부터 제대군인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할인 기간을 연장적용함에 따라 4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③ '25년도 하반기부터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청년할인을 적용하기 위해 6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미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210억 9,400만원)를 증액편성하기에 앞서 지난 3월 18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여 절차적 요건은 충족한 사안이나,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월간 이용자 수가 60만명에 근접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실수요를 부정확하게 추계하여 사업비 부족을 자초한 사안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24년도 상반기에 시범사업('24. 1.27~'24. 6.30)을 시행한 이후 '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본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해 시행한 학술용역('24. 3~'24. 8)의 최종보고서에는 ① '24년 3월 한 달 동안의 이용자 수가 55만 2,118명이며, ② '24년 5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K패스가 시행되었음에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활성화되어 있는 카드 수가 시범사업 종료시점('24. 6)까지 55만장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직후 시행된 본사업부터는 청년할인 등의 혜택이 추가되고, 30일권뿐만 아니라 단기권도 도입되었으며,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외의 범위도 확대되는 등 이용자 수가 점증될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는 바,
 - '24년 11월, 서울시가 '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도 평일 기준 약 60만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24년 9월까지 총 503만장이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미 월간 이용자 수가 55만명을 초과하여 60만명에 근접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사업수요를 과소 추계하여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려는 사안으로서 향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추계의 정밀도가 높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동 사업은 '25년 1월부터 제대군인에 대한 청년할인기간 연장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4억 2,000만원)는 금번 추경을 통해 사후적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절차적 모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사권한도 존중하지 못한 사례로 사료됨
- '24년 10월, 서울시는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 '24년 12월, 제327회 정례회 중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25년 1월부터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되어 제대군인에 대해 청년할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4년 10월 제출된 조례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4년 11월 제출된 '25년도 예산안을 통해서는 할인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요청 하지 않아 재정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사안으로,

- 사업부서는 할인기간연장을 위한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정 예산을 활용하여 '25년 1월부터 할인기간을 연장한 후 금번 추경을 통해 사후적으로 소요예산(4억 2,000만원)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인기간연장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예산의결을 요구하는 행태는 선(先) 제도시행 · 후(後) 예산확보라는 절차적 모순을 발생시킨 사례로 판단됨

○ 셋째,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에 사전절차 이행결과를 부정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210억 9,400만원)를 증액편성 요청 하기에 앞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25. 3)한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심의결과를 “조건부 적정”이 아닌 “적정”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표 4-26〉 사업별설명서 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기재내용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 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학술용역	2024. 10. 1.	적정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100%		적정 (2025. 3. 18.)
운영비보조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415

- 사업부서로서는 심의 당시 조건으로 제시된 내용이 동 사업의 소요예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보다는 본예산을 통해 기 편성된 **연구용역비**와 관련되어 있어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적정”으로 임의 기재한 사안일 수 있으나,
- 조건의 내용을 불문하고 실제 심의결과(조건부 적정)와 상이한 내용(적정)을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가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은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한 사안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별설명서 p.423)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40:6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995억 6,200만원)보다 411억 1,200만원 증액된 1,406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7〉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x39,825) 주1) 99,562	(x16,444) 41,112	(x56,270) 140,675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x39,825) 주1) 99,562	(x16,444) 41,112	(x56,270) 140,675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x16,444) 41,112

※ 주1) '25년도 본예산에 '24년 9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가내시한 국비(562억 7,000만원)와 지방비(844억 500만원) 대비 70.7%에 해당하는 사업비(국비 398억 2,500만원, 시비 597억 3,700만원)만 편성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424

②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5. 5), p.175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확정내시 대비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25년도 본예산에는 중앙정부의 가내시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를 통해 사업비 규모가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 요청한 사안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 실제로는 사업부서가 동 사업의 지원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여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당초 가내시('24. 9)한 국비(562억 7,000만원)와 시비(844억 500만원) 중 70.7%에 해당하는 사업비(국비 398억 2,500만원, 시비 597억 3,700만원)만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 '25년도 본예산이 의결('24.12.13)된 이후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가내시한 것과 동일한 규모로 국·시비를 확정내시('24.12.30) 하였으며,
- 회계연도 개시 이후의 사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서의 자체적인 추계에 따라 편성한 본예산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중앙정부의 당초 가내시 및 확정내시와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8〉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관련 내시현황 및 본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매칭비율)		(100%)	(40%)	(60%)
내시현황 ^{주1)}	가 내 시 ('24. 9. 9)	140,675	56,270	84,405
	확 정 내 시 ('24.12.30)	140,675	56,270	84,405
본 예산 편 성 현 황	예 산 액	99,562	39,825	59,737
	내 시 액 대 비 예 산 액 의 비 율	70.7	70.7	70.7
가 내 시 및 확 정 내 시 와 본 예산 편 성 액 간 차 액 (추경을 통한 증액편성 요청액)		41,112	16,444	24,667

※ 주1) 확정내시('24.12.30) 이후 추경안 제출시점('25. 5.26)까지 변경내시가 통보된 내역은 없음

자료근거 : 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916 ('24. 9. 9)

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1443 ('24.12.30)

③ '25년도 예산서 및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의욕을 앞세워 실제 사업수요 대비 과다한 규모의 사업비를 내시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내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 중앙정부의 내시규모를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소요예산을 상이하게 편성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실수요 등 지역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따라 소요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중앙정부의 내시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가내시보다 소요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임에도, 금번 추경안을 통해서도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가내시 및 확정내시된 규모대로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안으로,
- 서울시가 지역 내의 사업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본예산 편성시 발생 시킨 오류를 금번 추경을 통해 사후적으로 경정하려는 사례에 해당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 중 “추경사유”에 확정내시 대비 부족액을 편성요청한 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바,

- 가내시('24. 9. 9)와 확정내시('24.12.30)의 내시규모가 동일하며, 당초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된 규모보다 서울시가 과소편성한 결과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예산심사를 위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사실관계가 오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심사의 효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 (사업별설명서 p.431)

-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술용역의 과업내용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6억원)보다 1억 4,500만원 증액된 7억 4,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9〉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600 ^{주1)}	145	745	
연구용역비	600 ^{주1)}	145	745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및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145

※ 주1) '25년도 본예산에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편성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5. 5), p.432

- 관련법은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0년 11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관련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학술용역을 통해 수립하려던 것이나,
- ⑥ 장기간 지연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2차 구축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은 위례신사선에 관한 내용만 현행화하여 '25년도 중 수립을 완료하되, ⑤ 학술용역의 과업내용에 관련계획 수립을 추가하여 그간 변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25.4)한 것인 바,
- 사업계획 변경('25.4)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이 기존의 '25년 6월 30일에서 '26년 6월 30일로 1년 연장되고, 전체 용역비의 규모도 증가됨에 따라 금번 추경을 통해 용역비 증가분(1억 4,5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도시철도망에 대해 제2차 구축계획에 대한 변경계획과 제3차 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특히 제2차 구축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의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적기에 수립될 필요가 있으나,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동 사업은 회계연도 중 학술용역이 준공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금번 추경을 통해 용역비 증가분(1억 4,5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 이미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에 해당됨
 - 동 사업의 경우, '25년 6월 준공예정이던 학술용역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25. 4)을 통해 과업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이 '26년 6월로 연장되고 용역비도 1억 4,500만원 증가된 것으로,
 - 용역 준공기한('26. 6.30)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 중 용역비 증가분(1억 4,500만원)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일괄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 하고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사업은 '23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12개월간 학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9억 4,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나, 용역계약을 '23년 7월 체결하여 결산시점에는 용역준공기한('24. 7) 미도래로 인해 예산현액(19억 4,100만원) 중 63.3%, 12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24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자원(12억 2,900만원)을 집행한 것이나 철도노선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사유로 2차례의 연장을 통해 용역 준공기한이 '25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현액(12억 2,900만원) 중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6억원(예산현액 대비 48.8%)을 불용처리 하고, 동일한 규모의 예산(6억원)을 '25년도 본예산을 통해 다시 확보한 사실이 있는 바,

〈표 4-30〉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 세출결산 결과(2023~2024)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③/①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3	1,941 ^{주1)}	701	36.1	1,229 ^{주2)}	10
2024	1,229 ^{주2)}	629	51.1	-	600 ^{주3)}

주1) '22년 9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를 이행한 후 '23년도 본예산에 12개월간 학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임

주2) '23년 7월 1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3회계연도 결산시점에는 용역 준공기한('24. 7.11)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임

주3) '24년 6월, 당초의 용역 준공기한('24. 7.11)이 '24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으며, '24년 12월에는 용역 준공기한이 다시 '25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으나, 직전회계연도('23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재원은 재이월할 수 없어 불용처리 하고, 동일 규모의 예산을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임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여 추진되어 온 1건의 학술용역이 '25년 6월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이나 불용과 같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 '25년 4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용역 준공기한이 '26년 6월로 다시 연장되는 상황에서 편성요청된 용역비(1억 4,500만원)를 제출안대로 승인할 경우, 이월이 또 다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동 사업은 예산이월이 전제된 사안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회계연도 중 소요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 중 “2025년도 추진일정”에는 본예산 편성액(6억원)과 추경안 편성요청액(1억 4,500만원)을 포함한 7억 4,500만원 전액을 회계연도 중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표 4-31〉 사업별설명서 중 “2025년도 추진일정” 기재내용

□ 2025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745,753	
계약체결	2025.01~2025.01		계약체결
사업수행	<u>2025.01~2025.12</u>	<u>745,753</u>	과업수행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477

- 사업부서는 '25년 4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준공기한을 스스로 연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연도 중 용역비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는 회계연도 중 용역비를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어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동 사업은 추진하려는 사업내용과 사업명칭이 부합되지 않아 의회 심사과정에서 세부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사업명칭 부여시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25년 4월,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내용이 기존의 제2차 구축계획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제3차 구축계획 수립까지 추가되었음에도,
 - 세부사업명은 여전히 사업계획 변경('25. 4) 이전의 명칭(**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추진하려는 사

업내용과 사업명칭이 부합되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부사업명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기후환경본부

□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별설명서 p.475)

○ 동 사업은 소각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6억 900만원)보다 6억 1,5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바,

- 당초 본예산에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6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2〉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609 ^{주1)}	615	1,225	
시설비	609 ^{주1)}	615	1,225	○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15

※ 주1) '25년도 본예산에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476

○ 서울시의 관련 기준등은 기술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선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지난 5월 14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한 결과 ①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도록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용역비 6억 1,500만원을 편성요청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 4-33〉 사업별설명서 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기재내용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자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약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25. 5. 14.	<u>조건부</u>	<u>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 제시</u>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47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한 결과 실제 부여된 조건에는 ①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② 용역비를 사업부서의 요청액(6억 1,500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된 5억 9,1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 사업부서는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한 결과 용역비가 요청액(6억 1,500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되었다는 사실은 사업별설명서에 일체 기재하지 않고, 당초 요청액 전액(6억 1,500만원)을 금번 추경안을 통해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 중 “2025년도 추진일정”에는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소요예산(6억 1,500만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 4-34〉 사업별설명서 중 “2025년도 추진일정” 기재내용

□ 2025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225,248	
업체 선정 및 계약	2025.01~2025.07	0	계획 수립 및 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
(본예산) 용역수행	2025.04~2025.12	609,648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추경) 용역수행	<u>2025.07~2025.12</u>	<u>615,600</u>	<u>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u>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477

- 지난 5월 12일, ①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서에는 총 6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도 총 6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12개월간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회계연도 중 용역이 준공되지 않아 용역비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금번 추경안을 통해 용역비 전액(6억 1,500만원)을 편성요청함으로써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임에도,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는 회계연도 중 용역비 전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허위정보를 기재한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① 용역비를 사업부서의 요청액보다 감액하라는 심사결과를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아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도의 취지를 부정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②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용역비까지 금번 추경을 통해 일괄하여 편성요청함으로써 예산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에 해당하고,

- ③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전절차 이행결과 용역비가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이월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회계연도 중 용역비 전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허위사실까지 기재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심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경시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6억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이행결과 감액된 용역비와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7) 문화본부

□ 서울문화유산센터 건립 (사업별설명서, p.535)

- 동 사업은 강원도 횡성군에 서울문화유산센터(舊 통합수장고)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중 암반파쇄 등 긴급공사 비용 및 관람동선 안전강화 등을 사유로 시설비 38억 5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4-3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계				3,805
시	설	비		3,805
	○ 건축공사비 등			3,805

- 사업부서는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문화유산센터를 '25년 4월에 준공하고 7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표 4-36〉 2025년도 추진일정 (본예산 사업별설명서)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192	
건축공사	'24.01~'25.04	20,517	공사 진행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등 공사비 등
건설사업관리	'24.01~'25.04	661	건축공사 감리비용
자문위원회 운영	'24.01~'25.04	4	건립추진위원회 진행
시설부대비	'24.01~'25.04	10	공사현장 감독을 위한 출장 여비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문화본부)」('24.11), p.669

- 공사중 지반에서 암반이 출몰하는 등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관람동선의 안전강화, 화재예방, 그리고 수장고의 기능을 보완함에 따라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증가하여 개관시점을 당초 '25년 7월에서 '26년 5월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됨

○ 공사기간이 증가되면 건설사업관리(감리)기간도 증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사업부서는 동 사업에 대한 시설비만을 증액 요청하고, 별도의 감리비를 증액 요청하지 않은 바,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향후 사업추진중에 감리 등에 대한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비를 변경하여 감리비로 융통할 수 있을 것이나,

- 예산의 변경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로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로 한정하여 활용하는 제도로써, 회계연도중 감리 용역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재원이 소요될 것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시설비와 구분하여 편성요청하지 않은 것은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8)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591)

- 동 사업은 AI분야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6억 1,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7〉 서울장학사업 추진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9,555	2,612	12,168	
출 연 금	9,555	2,612	12,168	○ 출연금 2,612
				- AI 서울 테크 대학원 장학금(석사) 1,750 5,000,000원*350명
				- AI 서울 테크 대학원 장학금(박사) 750 7,500,000원*100명
				- 장학생 선발 관리비(심사 및 사업 운영비, 인력운영비) 112 112,651,000원)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592

-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의 의결결과에 따라 출연금 편성 여부도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특정 대상 및 용도를 지정해 장학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협의 대상이었으나, 보건복지부는 '25년 1월, 관련 지침을 변경하면서 지자체 장학재단(지

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음

- 다만, 서울장학재단 정관에는 AI 서울 테크 대학원 장학금(석, 박사)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어 AI 서울 테크 대학원 장학금(석, 박사)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안이 제출('25년 5월 26일)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한 협의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현재까지 관련 협의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26억 1,200만원에 대한 승인 여부는 관련 절차를 선행한 이후로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AI분야 석·박사급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장학재단 정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업별 설명서와 동 사업 조례에 따르면, 서울장학재단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정하고 있고,
 - 서울장학재단 설립 취지문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 AI분야 석·박사급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서울시가 장학재단을 출연 및 설립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장학금 지원대상 심사기준은 소득수준보다는 계획서, 성적 등에 중점을 두고 수혜자를 선발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장학재단의 사업목적에 고려할 때 타당한 심사기준인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595)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599)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603)

○ 관련법 및 관련 조례는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전출금의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이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세 전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지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정산분(441억 2,800만원)과 '25년도 지방세 미전출분(460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자 기정예산(1조 7,603억 8,400만원)보다 5.1%, 90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조 8,505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담배소비세 전출**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지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전출금은 감액(△35억 8,300만원)하고, '25년도 지방세 미전출분(64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자 기정예산(2,462억 6,900만원)보다 1.2%, 28억 5,500만원이 증액된 2,491억 2,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교육세 총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지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교육세 수입 초과수납분(373억 9,700만원)과 '25년도 지방세 미전출분(475억 3,300만원)을 정산하고자 기정예산(1조 8,179억 7,700만원)보다 4.7%, 849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9,029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8〉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률	추경예산안
지 방 세 전 출	1,760,384	90,156	5.1	1,850,540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46,269	2,855	1.2	249,124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817,977	84,930	4.7	1,902,908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215~216

9) 시민건강국

□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별설명서 p.654)

- 동 사업은 민간제약회사의 기부금 지정기탁에 따라 어린이 대상 비만예방과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9〉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계				500					
사	무	관	리	비	105				
	◦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 190,000원*500개소				95				
	◦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200,000원*10명*5회				10				
공	공	운	영	비	55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55,000,000원				55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90	
	◦ 비만예방 사업 효과분석 50,000,000원				50				
	◦ 만성질환관리 사업 효과분석 40,000,000원				4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250
	◦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 25,000,000원*10개구				250				

- 민간제약회사의 기부금 지정기탁에 따라 지난 2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5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제약회사 등과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당뇨병학회와 대한비만학회에 수집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고, 유아 비만 예방 사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반으로 어린이 신체 성장 발달도를 측정하여 3년간 측정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 사업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음

- 다만, 지정기부와 양해각서에 따른 데이터 제공이라 하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학회 등에 제공하는 것은 지정기부에 따른 우회지원 형태의 반대급부일 수 밖에 없어 서울시민의 건강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소요예산중 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 등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건부 적정’ 의결한 바, 보건소 등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되 저소득계층 어르신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대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보건소를 통해 대사이상 증후군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에도 특정 제약회사와 직역단체가 비만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시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사업의 중복성은 물론 공공 보건 행정이 민간제약회사나 보건의료 직역단체 보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광고하는 역효과가 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0) 디지털도시국

□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별설명서 p.863)

- 동 사업은 기정예산(4억 4,600만원)보다 18억 6,800만원 증액된 23억 1,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4-40〉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운영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446	1,868	2,314	
사무관리비	71 ^{주1)}	101	172	㉠ 신기술 이용료 지원 101
공공운영비	288	-	288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	-	6	-
전산개발비	81	1,188	1,269	㉡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시스템 및 AI 인프라 구축(정보화사업) 1,188 - 챗봇 2.0 시스템 구축 및 감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	578	578	㉢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시스템 및 AI 인프라 구축(정보화사업) 61 - 챗봇 2.0 웹소프트웨어 구매 ㉣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시스템 및 AI 인프라 구축(정보화사업) 517 -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GPU서버(1대) 도입

※ 주1) 기정예산의 사무관리비(7,100만원)는 신기술 이용료 지원을 위한 5,2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864~865

②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5. 5), p.253

③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과-3486 ('25. 3.21)

④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과-3516 ('25. 3.21) 등 재구성

- ㉠ 관련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신기술 이용료의 지원대상을 당초 (570명)보다 1,130명 확대하며, 지원방식도 당초 3개월간의 단기적인 체험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상시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 ⑥ 정보화사업인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시스템 및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17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정보화사업비(17억 6,700만원)의 경우, 서울시가 기 운영하고 있는 1세대 챗봇이 기술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2.0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① 시스템 개발 및 감리를 추진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1억 8,800만원과 ② 웹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1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 서울시의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③ GPU 서버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1,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을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칙등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정보화사업인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시스템 및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25. 4. 4)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비(17억 6,7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은 확보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 중 “2025년도 추진일정”에는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시스템 및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요청한 정보화사업비(17억 6,700만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 4-41〉 사업별설명서 중 “2025년도 추진일정” 기재내용

□ 2025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314,851	
AI 이용환경 조성	2025.01~2025.12	161,000	AI 특강 및 AI 신기술 이용료지원
AI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25.01~2025.12	288,103	챗봇(대시민 '서울톡', 직원용) 2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RPA 시스템 구축	2025.01~2025.12	81,348	RPA기반 자동화 대상업무 신규 발굴 및 시스템 구축
AI 행정 서비스 자문 등	2025.01~2025.12	17,400	전문가 자문, 과업심의, 제안서 평가 등
챗봇2.0 구축	<u>2025.07~2025.12</u>	<u>1,767,000</u>	<u>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및 AI 인프라 구축</u>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5. 5), p.866

- '25년 3월, ①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방침에는 '25년 7월부터 9월까지 용역 발주 및 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25년 10월부터 '26년 8월까지 **전산개발비**(11억 8,800만원) 등을 투입하여 **챗봇 2.0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사업부서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공문에도 사업기간이 '25년 10월부터 '26년 8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 ③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주관부서가 사업부서에 통보한 심사결과서에도 '25년 10월부터 '26년 8월까지 11개월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회계연도 중 **챗봇 2.0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금번 추경을 통해 시스템 개발 및 감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전액(11억 8,8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이미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세출예산 편성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관련 기준에도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요구하여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한 편성사례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전산개발비**(11억 8,800만원)는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를 재산정하여 감액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정보화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정보화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사안으로,

-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오해될 수 있고, 소요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닉하고자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1) 민생노동국

□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별설명서, p.835)

- 동 사업은 이동노동자(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의 안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9,900만원을 포함한 1억 9,9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4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계								(x99) 199	
	민	간		위		탁		금	(x99) 199
		◦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 쉼터 조성(2개소) 99,730,000원 * 2개소							(x99) 199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난 '23년 9월, 의결된 관련 동의안의 위탁내용중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운영”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어 동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민간위탁사업의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노동정책과)가 지난 '24회계연도에도 지하철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전용을 통해 확보하면서 서울노동권익센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소요예산의 경우에도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43〉 '24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노 동 자 종 합 지 원 센 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565	△86	-	'24.12.12
서 울 노 동 권 익 센 터 운 영	민 간 위 탁 사 업 비	-	-	86	

12) 재무국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사업별설명서 p.909)

- 동 사업은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일반회계)를 통합 편성하여 인건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77명의 보수(인건비)와 1,691명의 중요직무급수당 등을 증액하고자 보수 77억 200만원을 포함한 89억 4,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4〉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8,946
보	수			7,702
	◦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5,673,621,000원 ◦ 중요직무급수당 2,029,200,000원			7,702
기	타 직 보 수			294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94,572,000원			294
공 무 직 (무 기 계 약) 근 로 자 보 험 료 부 담 금 등				949
	◦ 공무직 4대 보험료 949,289,000원			949

- 재무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수중 인건비를 대규모 증액하는 사유로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원보다 35명의 보수예산(26억원)을 부족 편성하였고, '25년도 3월말 현원이 42명 증가하여 총 77명의 보수 예산(56억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며
- 보수중 중요직무급수당으로 2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도 '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수당을 부족 편성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691명의 중요직무급수당을 편성 요청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 당초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현원으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을 부족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규칙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당초 본 예산편성 당시부터 필수경비마저 부족하게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정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번 추경은 민생·안전·미래투자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것으로 보수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서울시가 보호·지원해야 하는 민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약자'에 대한 인식이 편의적 선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현원 증가로 인해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를 56억 7,300만원을 증액 요청하면서 동반하여 편성되어야 하는 선택적 복지 예산(행정국)은 회계연도중 인사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액을 활용할 수 있어 미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결과적으로 서울시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이 현원과 정원 등과 수시 연동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 점검 후 필요시 개선하여야 할 것임

13) 재난안전실

□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사업별설명서 p.1043)

- 동 사업은 지반이 꺼지는 현상(지반침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0억원을 신규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4-45〉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0	1,000	1,000	
시설비	0	1,000	1,000	○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1,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1043

- 지난 5월,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 5월 13일, 사업부서의 요구액(10억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으나, 제출된 예산안에 관련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조정된 예산의 규모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관련 기준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소액이라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요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용역비(시설비 10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25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있어 편성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사례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6〉 사업별설명서 2025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00	
시설비	'25. 7 ~ '26.12	1,000	○ 용역계약 및 시행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1045

□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사업별설명서 p.1058)

- 동 사업은 한강교량(옥수역 일대 강변북로 두모교)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5억원을 증액편성요청한 것임

〈표 4-47〉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350	3,500	4,850	
시설비	1,290	0	1,290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	3,500	3,560	○ 강변북로 두모교 경관조명 개선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5. 5), p.1058

- 사업부서의 방침서에 따르면 총 35억원(공사비 32억원, 설계 및 감리 3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25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어 편성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별설명서의 “사업추진 일정”에는 공사시행 및 준공을

'25년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회계연도중 공사를 추진하는 기간은 단 2개월 뿐인 것으로 판단되어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실제 소요 예산(2개월분)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35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사안임에도 사업별설 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동 소요예산(35억원)의 세부산출내역을 확인 할 수 없고, 지난 5월 26일,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도 사업비의 세 부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요예산(35억원)이 적정규모로 편성 요청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수변활력거점 명소화** (사업별설명서 p.1271)

- 동 사업은 인근 상권과 연계한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우이천 및 도림천 일대를 수변활력거점으로 명소화하고자 **사무관리비**(1억원)를 포함하여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48〉 수변활력거점 명소화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0	190	190	
사무관리비	0	100	100	◦ 수변활력거점 시설(테이블, 의자 등) 설치 지원
시설비	0	90	90	◦ 수변활력거점 차없는 거리 운영 - 20백만원*2개소(우이천, 도림천) ◦ 수변활력거점 시설 지원 조명 등 설치 지원

- 사업부서는 동 사업에 필요한 물품(테이블 등)을 구매하고자 1억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지출에 한정되는 예산과목으로서 결국 공무원이 주된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바,
 - 동 사업의 수혜자는 수변활력거점을 이용하는 시민 및 인근 상권 상인 등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 방침서에 따르면,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수변활력거점 명소화**는 기초성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도림천)에 콘텐츠를 보강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명소화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33억 9,0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을 선(先)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4-49〉 수변활력거점 명소화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 산 안
계		3,390
콘 텐 츠 보 강	1. 별빛 수변 피크닉 & 야간 페스타	200
경 관 개 선	2. 걷고 싶은 별빛 꽃길 조성	1,500
	3. 별빛내린천 수변테라스 간판개선	480
	4. 수변테라스 테이블 및 경관조명 설치 등	170
	5. 별빛내린천 하상분수 개선 공사	1,000
플 랫 폼 구 축	6. 수변테라스 구간 공공와이파이 구축	4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6735 ('25. 5.19), “도림천 수변활력거점 명소화 추진계획”

- 예산담당관은 **수변활력거점 명소화**는 기존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39억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투자심사 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사업부서는 방침서의 향후 계획에 '25년 7월, 제4차 투자심사 이행을 목표로 심사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바, 금번 추경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소요 예산(33억 9,000만원)중 일부 예산(5.0%, 1억 7,000만원)을 선(先) 편성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법정 절차 이행을 통해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4) 정원도시국

□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별설명서 p.1166)

- 동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으로서 기정예산(7,000만원)보다 9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는 총 28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성동구 소재 서울숲에서 개최될 '26년도 행사를 준비하고자 ① 초청정원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6억원과 ② 작가정원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표 4-50〉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70	900	970	
사무관리비	20 ^{주1)}	-	20	-
행사운영비	-	900	900	○ 초청정원 조성 600 ○ 작가정원 조성 300
시 설 비	50 ^{주2)}	-	50	-

주1) '25년도 본예산에 조직위원회 및 공모전 운영을 위해 편성된 것임

주2) '25년도 본예산에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1167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가 ① 지난 5월 8일 수립한 기본계획과 ② 5월 9일 투자심사(재심사)를 의뢰한 공문 그리고 ③ 추경안을 제출한 당일(5월 26일)에 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하면서 그 선행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 공문 등을 검토하면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내용과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상호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표 4-51〉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별설명서 기재내용과 실제 추진될 내용 간 비교

구 분	사업별설명서 기재내용 ^{주1)}	실 제 추 진 될 내 용 ^{주2)}
행사 개최횟수	연 1회 개최	연 2회 개최
사업기간	'25. 1~'26.12	상반기 행사 : '26. 5~6(2개월) 하반기 행사 : '26. 9~10(2개월)
개최장소	서울숲(성동구 소재)	상반기 행사 : 서울숲(성동구 소재) 하반기 행사 : 매현시민의숲(서초구 소재)
총사업비	28억 6,000만원	86억 5,000만원
초청정원·작가정원 관련 소요예산	초청정원 6억원, 작가정원 3억원	초청정원 9억원, 작가정원 11억원
비고	-	○ 이전에는 전체 행사기간(5개월) 중 7일~10일 동안 본행사를 개최하고, 나머지 기간은 상설전시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 2026년도 행사는 전체 행사기간(60일×2회) 동안 본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주1) 추경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2) '25년 5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 등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1167
 ② 서울특별시, 조경과-6218('25. 5. 8)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기본계획”
 ③ 서울특별시, 조경과-6289('25. 5. 9) “2025년 제4차(7월)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④ 서울특별시, 조경과-6926('25. 5.26) “2025년 제4차(7월)투자심사 의뢰 철회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의뢰” 등 재구성

- 추경안 제출시점('25. 5.26)에 임박한 '25년 5월 중 사업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추진하려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한 결과 사업별설명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추진되는 사업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동 사업은 법정 사전절차인 ①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와 ② 투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소요예산부터 우선적으로 편성요청한 사례로 판단됨

- 관련법 등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시·도의 행사성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 매년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 전년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금년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었다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법령 등은 시·도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 이후 “예산편성 전”까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 매년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되, 투자심사 후 사업대상지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매년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으로서 '24년 8월 총사업비는 28억 1,000만원, 사업대상지는 동작구 소재 보라매공원으로 명시하여 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지난 '25년 2월에는 총사업비를 33억 1,300만원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대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이행한 것이나,
 - '25년 5월,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존 투자심사(28억 1,000만원) 대비 207.8%, 58억 4,000만원 증가되고, 기존 지방재정영향평가(33억 1,300만원) 대비 161.0%, 33억 1,300만원 증가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 사업대상지도 당초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동작구 소재 보라매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성동구 소재 서울숲, 서초구 소재 매현시민의숲)으로 변경된 사안에 해당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기에 앞서 ①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다시 이행한 후 ② 투자심사(재심사)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추경안을 제출한 당일인 지난 5월 26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의뢰하여 7월 11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선행절차(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심사는 의뢰조차 하지 못해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기 위한 법정 사전절차들을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우리 위원회가 지난 '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법정 사전절차(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도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요예산부터 편성요청 하고 있어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동 사업이 증액편성 요청한 소요예산(9억원)은 제출안대로 승인되더라도 회계연도 중 전액 집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행사 개최연도를 기준으로 직전회계연도의 추경예산과 당해연도 본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바,

- 직전회계연도의 추경예산은 당해연도에 개최될 행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용도로 한 해 앞서 편성된 것이나,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4년도 행사준비를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한 행사운영비(12억 5,5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 되고, '24회계연도의 경우에도 '25년도 행사준비를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한 행사운영비(9억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52〉 2023~2024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297 ^{주1)}	36 (2.8)	1,255 ^{주2)} (96.7)	5 (0.4)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910 ^{주3)}	10 (1.0)	900 ^{주4)} (98.9)	- (0.0)

주1)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23. 7 의결)을 통해 ① 홍보기획, 조직위 및 공모전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4,200만원)와 ② 초청정원, 공모정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운영비(12억 5,500만원)를 포함한 12억 9,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주2)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도 중에는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실제 정원이 조성되는 것은 '24년도라는 사유로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한 행사운영비(12억 5,5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임

주3)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24. 6 의결)을 통해 ① 조직위원회 및 공모전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1,000만원)와 ② 초청정원 및 공모정원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9억원)를 포함한 9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주4) '24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제공모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실제 정원이 조성되는 것은 '25년도라는 사유로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행사운영비(9억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임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 아울러 '25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26년도 행사를 준비하고자 기본구상 용역을 4개월 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5,000만원)와 조직위원회 및 공모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2,000만원)를 포함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5년 5월말까지 기정예산(7,000만원)에 대해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되지 않아 단 1원도 지출되지 않고 있고, 기본구상 용역은 사업대상지 확정 지연되어 추경안 제출시점('25. 5.26)까지 용역을 발주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행사운영비)은 '23년도와 '24년도에 추경을 통해 편성된 행사운영비처럼 미리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나,

- ① 지난 회계연도에 동일한 용도로 편성된 행사운영비가 단 1원도 지출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고, ② 기본구상 용역이 준공되고 투자심사 등 법정절차가 이행된 이후에거나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회계연도 내 전액 집행될 가능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이 증액편성을 요청한 행사운영비(9억원)는 위법성과 이월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승인하기보다는 전액 삭감하고, 법정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별도의 예산심사를 통해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세출예산 감액 편성요청 사업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개 세부사업에 대해 △3,301억 8,4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 59개 세부사업 △697억 9,7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을 포함한 36개 세부사업에 △2,603억 8,6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4-53〉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회계명	세부 사업수	기정예산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총 계	95	7,483,723	△330,184	7,153,539
일 반 회 계	59	6,300,858	△69,797	6,231,061
특 별 회 계	36	1,182,865	△260,386	922,478

- 감액 요청된 95개 사업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608억원)을 포함한 9개 사업은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총 △626억 7,500만원을 감액 요청한 바,

- 관련법은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이나 하천시설의 점용 등을 하려면 한천관리청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어, 국가하천에 해당되는 중랑천에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나

-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협의를 지연되어 후속절차가 순연될 것으로 예상하여 '25년도중 집행이 불가능한 ①중랑천(성동구) 수변활력거점 조성(△7억 1,000만원), ②중랑천(동대문구) 수변활력거점 조성(△5억 4,000만원)에 편성된 소요예산 전액을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③**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1억 2,100만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그에 매칭되는 시비를 감액조정하는 것이며 ④**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2,9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심사결과 해당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4-54〉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편성 요청한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균형발전본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0,800	△60,800	-
물순환안전국	① 중랑천(성동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710	△710	-
물순환안전국	② 중랑천(동대문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540	△540	-
재난안전실	정릉천 2복개 구조물 내진성능보강	200	△200	-
미래공간기획관	신당역 지하 유희공간 기반시설 조성	154	△154	-
복지실	③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x60) 121	(x△60) △121	-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전력증설 시설부담금	100	△100	-
민생노동국	④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x13) 29	(x△13) △29	-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	20	△20	-

-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액요청한 95개 세부사업중 **20억원 이상 감액요청한**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608억원)**을 포함한 18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요청한 사업(△3,301억 8,400만원)의 72.7%, △2,401억 1,700만원으로 검토됨

〈표 4-55〉 감액요청된 사업중 20억 이상 감액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주 택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416,300	△96,200	320,1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	296,681	△29,895	266,785
균 형 발 전 본 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39,362	△26,829	12,533
주 택 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x54,873) 104,633	(x△-) △17,076	(x54,873) 87,557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x45,700) 162,071	(x△-) △8,507	(x45,700) 153,564
주 택 실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77,144	△7,800	169,344
복 지 실	기 초 연 금 지 급	(x3,174,136) 3,520,535	(x△7,014) △7,780	(x3,167,121) 3,512,754
교 통 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	145,950	△6,750	139,199
물 순 환 안 전 국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빛물배수터널)	9,000	△6,000	3,000
미래공간기획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8,202	△5,572	2,63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x26,700) 76,749	(x△-) △4,798	(x26,700) 71,951
여 성 가 족 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x8,266) 27,556	(x△1,408) △4,693	(x6,858) 22,862
재 난 안 전 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7,571	△4,600	2,971
소 방 재 난 본 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556	△3,707	849
문 화 본 부	국가지정유산 보존·활용	(x25,565) 36,238	(x△2,090) △2,688	(x23,475) 33,550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807,893	△2,471	1,805,421
시 민 건 강 국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x10,129) 15,224	(x△1,637) △2,447	(x8,492) 12,777
소 방 재 난 본 부	1 1 9 항 공 대 운 영	11,642	△2,300	9,342

※ 전액 삭감된 사업은 제외한 것임

- 감액 요청한 사업중 **기초연금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가지정유산 보존·활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당초 내시된 국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를 감액 요청한 것임
- 주택실 소관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당초 출자금으로 '24년도 정산금(170억 7,600억원)이 포함된 49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4년도 정산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재원중 정산금분에 해당되는 △170억 7,6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4-56〉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감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x54,873) 104,633	(x△-) △17,076	(x54,873) 87,55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	10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추진 = 10,500천원 1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x54,873) 54,873	(x-) -	(x54,873) 54,873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국고보조 (x54,873) = 54,873,000천원 54,873
출 자 금	49,750	△17,076 ^{주1)}	32,674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국고보조 32,674 = 32,674,000천원 ○ 정산비 = 0원 -

주1) 감액조정된 출자금 △170억 7,600만원은 전액 '24년도분 정산비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1078
②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주택실)」('24.11), p.125

- 동 사업은 예산편성 시기와 실제 매입 시기의 차이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예산편성 규모와 실제 매입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여 차액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액 선(先) 부담하여 지출하고, 서울시는 정산분(50%)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고 있음
- 금년도에는 '24년도 정산분(170억 7,600만원)에 대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와 SH가 협의중인 2차 정산분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으로 계획하여 금번 추경안에는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빗물배수터널)**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로 지출할 9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보상비(30억원)을 제외한 △60억원을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57〉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빗물배수터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감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9,000	△6,000	3,000	
시 설 비	9,000	△6,000	3,000	○ 시설비 = 3,000,000천원 3,000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1301
 ②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물순환안전국)」('24.11), p.307

- 아울러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는 기정예산(17억 700만원)의 △76.1%, △13억원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지난 '25년 2월 28일, 서울시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전주가 선정되어 기정예산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것임

〈표 4-58〉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감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707	1,300	407	
사무관리비	1,250	△1,150 ^{주1)}	100	○ 2036 하계올림픽 유치공감대 형성 100
연구용역비	50	-	50	○ 정책성 등급조사 5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400	△150 ^{주2)}	250	○ 올림픽레거시포럼 지원 200 ○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지원 50
국제부담금	7	-	7	○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연회비 7

주1) 감액조정된 사무관리비는 ① IOC 미래유치위원회 국내 실사 준비 △5억 5,000만원
② 2036 하계올림픽 유치공감대 형성 △6억원

주2) 감액조정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① 2025 올림픽데이런 지원 △1억원
② 2025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 지원 △5,000만원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5), p.574
②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관광체육국)」('24.11), p.230

- 동 사례처럼 투표 결과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나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안까지 결과를 낙관하여 예산을 선(先) 편성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기편성된 예산을 감액조정하기보다는
- 투표 결과나 사전절차 이행 이후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추경 등을 통하여 이후 투입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부서는 동 사업에 기 편성된 연구용역비(5,000만원)로 “서울 스포츠 정책의 재정립 및 국제스포츠 교류 진흥을 위한 서울시 역할 연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나,

- 당초 사업부서가 본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정절차인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정책성 등급 조사” 이행을 위한 용역비라는 점에서 현재 사업부서가 추진하려는 연구용역과 차이가 있어 지출할 경우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관련 조례에는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체육정책과)도 연구용역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술용역 심의 총괄부서(창의행정담당관)에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도 두 학술용역이 별개의 건이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만일 사업부서가 '25회계연도 내에 해당 용역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동 사업에 기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감액조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의 소요예산을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요청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V. 기타검토 의견

□ 출연 동의가 필요한 사업

-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p.241)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485)
- 서울장학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591)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별설명서, p.607)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805)
- 서울AI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870)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979)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출연금에 대한 증액요청 7개 사업과 출자금에 대한 감액요청 1개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소요예산중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출연금을 증액 편성요청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을 포함한 7개 사업은 관련 규칙에 따라 회기시작 15일전인 지난 5월 26일 관련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편성요청된 출연금은 관련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9〉 '25년도 제1회 추경안중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출연금 (증액)	의안명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경제실)	1,400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836)	기획경제	'24. 5.26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본부)	29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840)	문화체육 관광	'24. 5.26	
서울장학사업 추진 (평생교육국)	2,612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834)	행정자치	'24. 5.26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평생교육국)	41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835)	행정자치	'24. 5.2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민생노동국)	28,500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838)	기획경제	'24. 5.26	
서울시재단 출연 (디지털도시국)	2,88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재 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841)	주택공간	'24. 5.26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디자인정책관)	37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842)	도시계획 균형	'24. 5.26	

□ 민간위탁 동의를 필요한 사업

○ 관련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관련 기준에도
① 신규 위탁사무, ② 재위탁 사무, ③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산편성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개 실·본부·국, 15개 세부사업에 대해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여성가족실 소관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여 관련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금을 편성요청한 다른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 동의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여성가족실 소관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증액요청된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4억 2,000만원)을 포함하고 있고,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도 “2024년 7월16일, 적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기재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결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적정”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동의”나 “부동의”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세부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1년 8월, 제출되어 서울시의회가 이미 지난 '21년 9월,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심의결과와 심의일자는 임의로 내용을 기

재한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정확한 내용만 기재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민생노동국 소관 신규사업인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은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3월, 국고보조금 2,200만원이 교부되었고, 제2차 간주처리('25. 4.22)를 통해 국비 5,300만원을 세입조치한 바,

- 금번 추정안에는 국고보조금 2,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도 국비와 시비 대응편성분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24년 6월,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실제로도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로서는 신규사업을 편성요청하는 것이라 하여도 지난 '24년 6월,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기존 위·수탁사무에 포함되는 사무이기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일 수 있으나,
- 서울시의회가 지난 '24년 6월,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25년도에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까지 미리 예측하여 약 1년전부터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관련 조례는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조를 통해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25년도에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관련 조례에 열거된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에 해당될 수 밖에 없어 신규사업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별도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60A〉 '25년도 제1회 추경안중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민간위탁금 (증액)	민간위탁 동의 관련 의안	제출일	심사일	의결 결과
여성가족실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216	서울형 키즈카페(시립1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54)	'22. 10.17	'22. 12.16	동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61)	'25. 3.31	-	-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8	시립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3. 6.13	'23. 6.13	동의
〃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397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9. 4	'23. 9. 4	동의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35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51)	'20. 8. 12	'20. 9. 15	동의
〃	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	420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79)	'21. 8. 11	'21. 9. 10	동의
경제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1,000	서울특별시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 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55)	'22.10. 17	'22.12. 16	동의
〃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2,950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215)	'22. 5. 25	'22. 6. 21	동의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표 4-60B〉 '25년도 제1회 추경안중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민간위탁금 (증액)	민간위탁 동의 관련 의안	제출일	심사일	의결 결과
복지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23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4.12. 18	'24. 12. 18	동의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124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09)	'24. 8.12	'24. 9.11	동의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4,874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 9. 4	'20. 9. 4	동의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5,09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0. 6. 18	'20. 6. 18	동의
민생노동국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101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16)	'24. 5. 27	'24. 6. 28	동의
〃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55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16)	'24. 5. 27	'24. 6. 28	동의
〃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199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75)	'23. 8.14	'23. 9. 8	동의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145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12.21	'22. 12.21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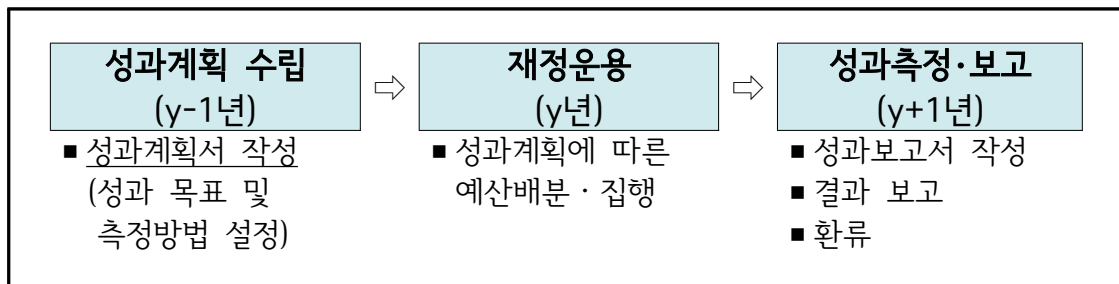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VI.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1. 성과계획서 관련 검토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를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표 5-1〉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24.12, p.76

- 나아가 관련 기준은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①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하고, ②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③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있고,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 '16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예산 확정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관련 기준은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추경예산으로 인하여 예산변동이 있음에도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부적합한 성과지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성과보고서를 신뢰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48조 1,144억원)보다 3.4%, 1조 6,546억원이 증가된 49조 7,691억원으로 조정을 요청하고 있어 성과계획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 금번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성과계획서를 수정반영하여 '25회계연도 결산시점에 성과보고서상의 성과목표, 지표, 예산액 등 주요 성과정보가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 성인지예산제 관련 검토

-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관련법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보다 3.4%, 1조 6,546억원 증액 요청하고 있어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 관련 조례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라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결산이 일치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관련법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계획은 '24년 11월, '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20개 기금, 28개 계정)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임
- 관련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법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25년도 예산이 수정 의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1조 6,546억 원 증액된 49조 7,691억원으로 경정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25년도 예산안)	' 2 5 년 도 본 예 산 (의 회 의 결)	' 2 5 년 도 제 1 회 추 경 예 산 안	증 감 (C)=(B)-(A)	증 감 륜 (C)/(A)
			(A)	(B)		
총 계		480,407	481,144	497,691	16,546	3.4
	일 반 회 계	343,839	344,189	355,969	11,780	3.4
	특 별 회 계	136,568	136,955	141,721	4,766	3.5